

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

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0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.

발의자 : 설훈 · 소병훈 · 위성곤
유은혜 · 안민석 · 권칠승
조승래 · 신동근 · 이원욱
박홍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신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·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10년마다 수립하고,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(feed-back)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·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

자산의 취득 및 보전·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
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3 신설).

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
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실태조사)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·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시행계획) ①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② (생 략)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시행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</p> <p>제6조의3(실태조사) ① <u>국민신탁 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·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</u></p>